

202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총 계					364명		
제1회 임용 시험 (4.26.)	소 계			15명			
	경력 경쟁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6명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8명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1명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제2회 임용 시험 (6.21.)	소 계			333명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4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장애인		7명		
			저소득층		4명		
		세무직 (지방세)	일 반	9급	3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장애인		5명		
			저소득층		2명		
		전산직(전산)		9급	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급	1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2명		
			저소득층		1명		
		사서직(사서)		9급	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직(속기)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업직(일반기계)		9급	2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시험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제2회 임용 시험 (6.21.)	공개 경쟁	농업직(농업)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1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환경직(일반환경)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도시계획)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일반토목)	9급	8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2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 경쟁	수의직(수의)	7급	10명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의료기술직(의료기술)	치과위생 9급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제3회 임용 시험 (11.1.)	소 계			15명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7급	2명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1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운전직 (운전)	일 반 보훈청 추 천	9급	4명
		공업직 (일반기계)	기술계 고 졸	9급	2명
		공업직 (일반전기)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 타		의무직(일반의무)	5급	1명 ※ 의무직 5급은 별도 공고 및 채용 예정

※ 과목 : 대구광역시 자체 출제 / 그 외 과목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근무예정기관은 대구광역시(의회포함) 및 9개 자치구·군(의회포함)임.

※ 직렬(직류)별 결원 현황에 따라 본인 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에 배치될 수 있음.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 2025년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9급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수의연구직·수의7급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거주지 제한 :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 12. 31.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8.12.31.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을 취득하여야 함.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자격(면허)증
제1회 임용 시험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 수의사
제2회 임용 시험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1·2·3급
	사서직(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자격(면허)증
제2회 임용 시험	속기직(속기)	9급	• 한글속기 1·2·3급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치과위생	9급	• 치과위생사
제3회 임용 시험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기술계고졸	9급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직렬(직류)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하고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각급 대학 중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졸업자는 졸업일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사이 기간 1년 이내인 자

- (1) 연구직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 (2) ‘해당 학문 및 관련계통의 학문’의 해당 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로 판단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3) 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 (4)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5) 연구직·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7) 자격(면허)증 원본 및 추천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수의연구직, 수의7급, 기술계고졸은 별도 기간 제출)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함.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수급기간 등 명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을 추천 가능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을 추천 가능
- ※ 추천대상자(고졸자)는 기술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며, 대학중퇴자(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도 포함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성적합산 기준은 졸업생은 고등학교 전학년,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음.

구 분	직렬(직류)	직급	관 련 학 과
기술계 고 졸 경 력 경 쟁	공업직 (일반기계)	9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 (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 (예정)자

- 추천과 별도로, 추천받은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허위 학력 등 응시자격 미충족 및 응시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25. 6. 30.(월) ~ 7. 4.(금)** / 5일간, 09:00~18:00
- ▶ 제출방법 :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자 개별제출 불가
-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11동 2층)
- ▶ 제출서류 : **추천 현황표, 학교장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상의 증명서 / 평균석차 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졸업(예정)증명서
-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사람만 응시 가능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대상자도 추천과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인터넷)	시 구 험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2. 24.(월) ~ 2. 28.(금) ※ 취소 : 2. 24.(월)~3. 3.(월) ※ 추가취소 : 4. 1.(화)	수의 연구	서류 전형	4. 28.(월) ~ 5. 2.(금)까지 서류제출	5. 7.(수)	5. 9.(금)
		필 기		4. 11.(금)	4. 26.(토)	5. 9.(금)
		면 접		5. 9.(금)	5. 22.(목)~5.23.(금)	6. 5.(목)
제2회 임용시험	3. 24.(월) ~ 3. 28.(금) ※ 취소 : 3. 24.(월) ~ 3. 31.(월) ※ 추가취소 : 5. 19.(월) ~ 5. 21.(수)	필 기		6. 4.(수)	6. 21.(토)	7. 18.(금)
		면 접		7. 18.(금)	8. 6.(수)~8. 8.(금)	8. 29.(금)
	6. 16.(월) ~ 6. 20.(금) ※ 취소 : 6. 16.(월) ~ 6. 23.(월) ※ 추가취소 : 6. 25.(수)	수의 7급	서류 전형	6. 23.(월)~ 6. 27.(금)까지 서류제출	7. 1.(화)	7. 14.(월)
			면접	7. 18.(금)	8. 6.(수)~8. 8.(금)	8. 29.(금)
제3회 임용시험	7. 21.(월) ~ 7. 25.(금) ※ 취소 : 7. 21.(월) ~ 7. 28.(월) ※ 추가취소 : 10. 6.(월) ~ 10. 7.(수)	필 기		10. 17.(금)	11. 1.(토)	11. 21.(금)
		면 접		11. 21.(금)	12. 11.(목)~12. 12.(금)	12. 26.(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에 공고
- ※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까지 24시간 운영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접속 후 개인별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됨.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응시수수료의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취소기간 및 추가 취소기간 내 취소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함.

마. 응시원서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규격은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응시생 본인 얼굴의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함.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응시자는 최종 제출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장애인·임신부 등)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제출 등은 붙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

-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 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IBT				
일 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	352	-	350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붙임 ‘2025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안내’ 필독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하여야 함.

※ 사전등록 대상 시험

- 토익, 텡스, 지텔프, 플렉스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에도 응시원서 제출 시 영어성적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편 등으로 등록방법 변경시 추후 공고 예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하여야 함.
[추가등록기간 : 2025.10.20.(월) ~ 2025.10.30.(목)]

◎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공지사항 및 사전등록 방법안내를 참고할 것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입력함.
-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 필요 없음.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하여야 함.
[추가등록기간 : 2025.10.20.(월) ~ 2025.10.30.(목)]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
-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함.
※ 위탁출제 과목 및 자체출제 과목은 붙임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자체출제 안내’ 참고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예시)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5.6.21.인 경우, 2025.4.30.현재가 기준이 됨.
-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물리는 물리학 I 에서 출제되며,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계설계’ 과목은 ‘기계제도’로 변경하여 출제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직렬별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확인하여야 함.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구·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 기술직군(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 4]에 의함.

마.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 직렬별 적용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존번호 등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10.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 ※ 선발예정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내 적용

나.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에 따라 결정함. ※ 면접시험 시행계획 별도 수립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1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채용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2.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실시대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 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음.

13.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답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답안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작 후 불필요한 자료 및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 및 전산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기술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중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이전까지 대학에 재학·휴학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시험 종료 후 따로 반환하지 않음.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 '시험 정보'란에 공고함.

※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공고문 외 붙임 안내 자료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053-803-27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